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3. 11. 25.

발의자 : 정 형식의원의외 2 인

1. 제안이유

- 2004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12. 1.~12. 20(20일간)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.
-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.